

붙임.

□ 자기자본 요건 확인 관련

- 대차대조표 상 “자본” 으로 확인.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의 경우 (자기)자본 항목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함.

〈대차대조표 예시〉	
자산	부채 (타인자본)
I .현금 및 예치금	I .차입부채
II .유가증권	II .기타부채
III .대출채권	자본(자기자본)
IV .유형자산	I .자본금
V .기타자산	II .자본잉여금
	III .자본조정
	IV .기타포괄손익누계액
	V .이익잉여금

- 자기자본 요건 확인 관련 증빙서류(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참조) : 감독기관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자료 요청 시 참고

가. 법인의 경우

- 1)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: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, 자본금납입 증명서
- 2)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
 - 가)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: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, 감사보고서
 - 나)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: 세무서에서 발급한 “표준재무제표증명” 서류, 다만, “표준재무제표증명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(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)

나. 개인의 경우

- 1) 부동산 : 영업소 등기부등본(공시가격 포함)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2) 동산(차량 등) :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- 3) 현금 및 예치금 : 예금잔액증명서(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) 1부
- 4) 기타 자산 :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- 5) 부채 총계 :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
□ 최소자본금 요건 관련 규정

대부업법 제3조의5(등록요건 등)

-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(시·도지사 등록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)을 갖출 것. 다만,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(금융위원회 등록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2.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. 다만,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대부업법 부칙 제5조(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8(자기자본)

-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(시도지사 등록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 - 1.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: 5천만원
 - 2.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: 1천만원
-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(금융위원회 등록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3억원을 말한다.
-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)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손해배상책임 이행 관련 규정

대부업법 제11조의4(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)

-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(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)

-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.
 - 1.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: 1천만원
 - 2.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: 5천만원